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89호 2026. 3. 3.(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402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3일

예 천 군



1. 조례명 :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 추가(안 제22조)

4. 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thdduswn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도시과

3) 팩스 : 054-650-6945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(전화: 054-650-945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2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</u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